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대학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91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2.
3. 회부연월일 : 2026.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현장실습이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 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③ ~ ⑤ (생략)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지방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u>

2. 검토의견

1) 기본계획에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5조)

-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대학에서 실시한 현장실습과 채용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대학의 소재 지역별 취업률 및 지역 거주 의향¹⁾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수도권²⁾의 취업률은 71.3%이나, 비수도권은 67.7%로 약 4%p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²⁾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층(19세~34세)은 2024년 기준 총 62,000여명으로, 이 중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원은 총 58,000명으로 집계되어 총 이동 인구 중 약 94%에 달하고 있음.

1) 교육부,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2025.12.30.

2) 국가데이터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2025.9.17.

<수도권 1인 이동자의 청년층과 중장년층 전입사유별 순이동>

(단위: 천 명)

구분	'18	'19	'20	'21	'22	'23	'24
1인 이동 전체	67	79	86	67	52	50	50
직업	57	64	69	63	60	56	56
가족	-10	-9	-8	-14	-20	-18	-16
주택	7	7	3	0	-3	-3	-4
교육	17	19	25	24	22	19	18
주거환경	1	2	3	2	2	2	3
자연환경	-6	-7	-8	-9	-8	-7	-7
기타	2	2	2	1	-1	0	0
청년층	74	83	91	78	72	63	62
직업	61	66	70	66	64	59	58
가족	-13	-12	-12	-16	-17	-16	-16
주택	9	9	7	5	3	2	2
교육	14	16	22	21	19	16	16
주거환경	2	3	3	2	3	3	3
자연환경	-1	1	-1	-1	-1	-1	-1
기타	2	2	2	1	1	0	0
중장년층	-11	-9	-9	-13	-19	-15	-13
직업	-6	-4	-4	-4	-5	-4	-3
가족	1	1	2	0	2	1	1
주택	-1	-1	-2	-3	-4	-4	-4
교육	0	0	0	0	0	0	0
주거환경	0	0	0	0	-1	0	0
자연환경	-4	-4	-5	-5	-5	-4	-4
기타	-1	-1	-1	-1	-1	-1	-1

자료: 국가데이터처

- 이에 개정안(안 제5조)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지방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현장실습 이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대학의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특히,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촉진을 위한 시

책이 수립될 경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에 관련내용이 반영될 경우 그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 지는 등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예정('26.8.11.)인 법률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뿐만 아니라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지방인재의 취업과 지역정주 개선에 관한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이와 별개로 기본계획의 내용에 '현장실습과 채용연계 관련' 사항을 반영할 경우 계획에 혼선 등이 없을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아울러, 현장실습은 그 성격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일환³⁾이며,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의 협약⁴⁾을 기초로 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를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 3)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 4)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학생 취업 촉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본계획 단계부터 채용 연계를 명시할 경우 산업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이 채용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실습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재정적 우대조치(안 제16조제5항)

- 개정안(안 제16조제5항)은 신설되는 산학협력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학 및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장실습은 학생에게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써, 채용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데,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특히, 지역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우 채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채용 연계 실적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체 입장에서조차 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현장실습 참여 자

체를 축소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기회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 현황 및 실습생 채용 실적을 재정지원과 연계 시 소외지역 대학 현장실습 운영 및 기업 실습 참여는 제한될 수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